

학생 단체 활동 안전 관리 규정

제정 2017. 05. 01 개정 2019. 08.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단체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과 대학 내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 활동”이란 대학,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이 주관하여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오리엔테이션, 대의원회 행사(체육대회, 축제 등), 학과행사, 엠티, 환영회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이다.
(개정 2019. 08. 26.)

② “인권침해 행위”란 학생 단체 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이다.

1.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뺨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 등을 가하는 행위
2.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성적 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제3조 (조직) ① 학생 단체 활동 시 사고 예방과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 총괄 책임자는 학생 복지처장으로 한다.

② 사고예방과 체계를 위하여 단체 활동을 주관하는 학생과 학과장(지도교수)을 현장 책임자로 하고, 준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인권침해 사고발생시 인권침해 학생의 신고·상담·처리는 학생복지처에서 한다.

제4조 (준수사항) 현장 책임자는 학생 단체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인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1. 숙박시설(장소)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
2.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②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1.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2.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

③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④ 행사 전 사고예방에 관한 현장 답사

⑤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음주 및 인권침해(폭력, 성희롱 포함) 근절 서약서 작성]을 반드시 실시 후 행사승인 신청서(별지 1호) 및 관련 서류(별지 제2호, 제3호)를 5일전 제출 후 행사 승인 시 진행

⑥ 학생 단체 활동 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반드시 교·직원 동행

⑦ 예산 집행 내역 공개(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

⑧ 사고예방을 위해 학생 단체 활동 시 음주행위는 불허한다.

제5조 (사고 조치 및 보고) 학생 단체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현장 책임자는 사고 상황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선조치 후 보고한다.

①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경찰서·소방서(응급구조) 등에 연락

② 사고 발생 상황 보고

③ 사고 처리절차 및 학생 조치 계획 마련

④ 단체 활동에 대한 운영중지·폐쇄·재정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제6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 사항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1. 교통 안전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셨습니다가?(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운전자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는 확인하셨습니다가?	
	안전 교육 비상 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셨습니다가?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셨습니다가?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셨습니다가?	
	비상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셨습니다가?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2. 숙소 점검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착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3. 화재 예방	답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착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가?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셨습니다가?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셨습니다가?	

년 월 일

점검자 : 학과 교수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음주 및 인권침해(폭력, 성희롱 등) 근절 서약서

학과 전원은 행사시 절대로 음주 및 인권침해(폭력, 성희롱 등)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만약 사고발생시 해당자는 어떠한 징계(처벌)도 감수 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서명) 합니다.

NO	직책	학과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년 월 일

확인자 : 학과 학과장 (서명)